

창 원 지 방 법 원
제 1 행 정 부
[2018구합50220]

사 건 명 : 요양불승인처분취소

원 고 : 원고1

김해시 이하 생략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A

담당변호사 변호사1

피 고 : 수협중앙회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B

담당변호사 변호사2

변론 종결 : 2018. 11. 28.

판결 선고 : 2019. 01. 23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

청구취지

피고가 2017. 11. 28.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(이하 '어선원재해보험법' 이라고 한다) 제9조에 따라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고, 원고는 2015. 12. 3. 사망한 ○○○의 배우자이다.

나. 원고의 남편 ○○○은 2015. 10. 4. ○○○과 2015. 10. 4.부터 2016. 3. 31.까지 ○○○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(이하 '이 사건 선박' 이라고 한다)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근로계약(이하 '이 사건 근로계약' 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다. 그러나 ○○○은 이 사건 선박의 출항 일정이 잡히지 않아 ○○시 소재 '○○○항' 인근에서 승선을 대기하던 중 2015. 11. 24. 03:00경 뇌경색이 발병하였고(당시 ○○○이 선원 숙소로 제공한 모텔에서 휴식 중이었다),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5. 12. 3. 심정지로 사망하였다.

라. 한편 ○○○은 어선원재해보험법 제16조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고, 이에 원고는 2017. 10. 28.경 피고에게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, 28조에 따라 ○○○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126,428,900원, 장례비 11,670,36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마. 그러나 피고는 2017. 11. 28. 원고에게 ○○○이 직무상 또는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(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, 28조)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처분(이하 '이 사건 처분' 이라고 한다)을 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9호증, 을 제1 내지 12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관계 법령

별지 기재와 같다.

3.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는, ○○○의 처인 원고가 어선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어선원재해보상법 제2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, 제2항, 선원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"선원의 사망 당시에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"에 해당하여야 하는데, 원고는 ○○○의 사망 당시에 그에 의하여 부양되었거나 동거하였음을 인정할 수가 없어, 신청권 자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갑 제4호증과 증인 ○○○(원고와 ○○○ 사이의 자)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○○○과 사망 당시에 동거를 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.

4.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○○○은 ○○○에게 어선원으로 고용되어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, 28조에 정한 직무상 또는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고, 또한 원고는 ○○○의 배우자로서 위 규정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,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.

나. 판 단

살피건대, 을 제1 내지 3, 6, 12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, ○○○이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, 28조에 정한 직무상 또는 승무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가) ○○○은 2006. 5.경부터 2012. 12.경까지 본태성 고혈압(essential hypertension)으로 ○○회 치료를 받았고, 2013. 1.경부터 2013. 5.경까지 뇌경색으로 ○○회 치료를 받았으며, 2013. 5.경부터 2013. 7.경까지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으로 ○○회 치료를 받았고, 2013. 7.경부터 2015. 8.경까지 뇌경색증, 중풍 후유증 등으로 ○○회 치료를 받았으며, 이후에도 고혈압 약을 계속하여 복용해 왔다, 이처럼 ○○○은 오래 전부터 이미 뇌경색을 앓고 있었고 2015. 8.경까지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 왔다.

나) ○○○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약 2개월간 1주일 약 50시간, 1일 약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고, 그 근로의 내용도 정박 중인 선박을 방문하여 선박의 엔진 등 기관을 점검하는 정도에 그쳤으므로, 과중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. 또한 뇌경색 발병 당시 ○○○은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, 발병 직전에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.

다) 그 밖에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○○○의 업무 수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, ○○○이 직무상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.

라) 한편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,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'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'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여기서 '승무 중'이란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기간, 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,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, 휴무를 마치고 배로 복귀하는 여행기간 등 실제 승무 중인 기간 또는 적어도 구체적인 항행조직의 일원으로 구성된 기간을 의미한다(대법원 1999. 9. 17. 선고 99다24836 판결 등 참조)

그런데 이 사건 선박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체결 이후 출항을 한 바 없고 출항 계획이 잡힌 상태도 아니었으며, 출항을 위한 구체적인 항행조직이 구성된 바도 없으므로, ○○○이 이 사건 선박에 승무 중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. 따라서 ○○○은 승무 중 직무 외의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.

5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1

판사2

판사3

